

서울특별시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구 서울원스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861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17. 6. 2.
다. 회부일 : 2016. 6. 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폭력피해여성 등의 의료, 수사, 상담을 위한 지원시설로서,
- 폭력피해여성 등에 대한 의료, 수사, 상담 등의 지원으로 침해구제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
- 시설규모 : 건물 122m²
- 설립일자 : 2008. 1. 21.
-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8. 1. 1. ~ 2020. 12. 31.)
- 위탁업무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소요예산 : 321,486천원 (2017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2017. 5.)
- 민간위탁 추진현황
 - 3차 : 2014. 1. 1. ~ 2017. 12. 31. (3년, 국립경찰병원)
 - 2차 : 2011. 1. 1. ~ 2013. 12. 31. (3년, 국립경찰병원)
 - 1차 : 2008. 1. 21. ~ 2010. 12. 31. (3년, 국립경찰병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기타사항

-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2017. 5.)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민간위탁 추진 개요 및 경위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 인 ‘동부해바라기센터’의 위탁 기간이 오는 ‘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민간위탁 연속 4회 차)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장이 상기 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하려는 구체적 사무내용은 폭력피해여성 등의 의료, 수사, 상담을 위한 지원업무 임.

2 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개요 및 운영현황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18조2)에서 정한 시설로서,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 치료, 법률,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임.
- 동 센터의 설치·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5 : 5)으로 지원되고 있고, 2017년 기준 서울시 지원 예산은 3억 2,148만원 임.
- 동 센터는 `01년 10월 여성부가 국립경찰병원을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후 `05년 8월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로 전환된 것임.

<센터운영 추진경과>

- `01. 10월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로 국립경찰병원을 지정(여성부)
- `05. 8. 31.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로 전환(여성부)
- `07년 이 센터 운영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08. 1. 21. 국립경찰병원에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1회차, 서울시)
 - 2회차(`11. 1. 1.), 3회차(`14. 1. 1.) 이 센터 운영을 동 병원에 민간 위탁
- `10. 4. 15. 이 법률 제정에 따라 이 센터 설치 근거(제18조)가 마련
- `14년 이 센터를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로 개칭(여성부)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이어, `07년에 동 센터의 운영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가 동 사무를 국립경찰병원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3회에 걸쳐 민간위탁 계약 (`08년 1월, `11월 1월, `14년 1월)을 맺고 운영해왔음.
-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3회차 위탁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4회 차 민간위탁 계약에 앞서 ‘민간위탁 연속 4회차’ 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참고로, 현재 서울시 관내 동 센터와 같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는 총 6개가 운영 중임(아래 표).

<해바라기 센터 운영 현황>

- 2017년 현재, 단위: 천원

연번	시설명칭	운영기관	종사인력	시설규모	'17예산	시설 기능(특징)
1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국립경찰병원	14명	12200㎡	321,486	위기 대응,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
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 병원	13명	99.55㎡	321,486	위기 대응,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
3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연세의료원	13명	65680㎡	786,223	통합 지원,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및 정신지체 장애인 전문
4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 병원	25명	19959㎡	903,471	통합 지원,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및 정신지체 장애인
5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삼육서울병원	16명	17887㎡	701,455	통합 지원,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및 정신지체 장애인
6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국립중앙의료원	4명	30300㎡	688,110	통합 지원,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및 정신지체 장애인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는 `16. 12.월 개소

3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 이런 점에서,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 관한 사무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수사 등에 관한 서비스로 대체로 고도의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이 적합한지와 동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 상기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다만,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동 사무를 서울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의 형태로 추진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할 것이나, 동 사무는 아래의 이유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민간보조’ 방식의 사업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로 하는 의료·수사·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가 장소를 옮겨 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의료(병원)-수사(경찰)-상담(서울시 지원)과 관련 3개 기관(및 인력)이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 것임.
- 실제, 동부해바라기 센터의 경우에도 총 14명의 인력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 5명이 과전근무 중이며, 경찰병원에서는 의료에 필요한 셋팅과 의료서비스 필요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서울시에서는 간호사와 상담원(행정인력 포함 총 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동부해바라기센터 인력 구성 현황>

계	시설장(겸직)	간호사	상담원	행정원	경찰관	비고
14	1	2	5	1	5	부시설장은 경찰관이 겸직

※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 5명 과전근무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08년 당시 동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즉, 서울시)로 위임된 이후부터 이의 운영을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병원-경찰-서울시간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현행의 민간위탁 운영방식과 같이 서울시가 동 사무에 대한 ‘갑’(위탁자)되고, 사업수행의 파트너이자 당사자인 경찰과 의료기관이 ‘을’(수탁자)이 되는 현재의 구조는 현실적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본 사무는 3자 기관이 동등하고 협력적인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보다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